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및 통지의무

The Applicant's Liability of Examination of Document and Notification of the Discrepancies
in Credit Transaction

박규영(Kyu-Young Park)
청운대학교 교수 및 대학원장

목 차

| | |
|----------------------|----------|
| I. 서 론 | IV. 결 론 |
| II. 사건의 사례 | 참고문헌 |
| III. 법원판결내용 검토 및 문제점 | Abstract |

Abstract

This study is related with the judgements of our country's supremecourt against the transaction of Letter of Credit which is beneficiary's fraudulent trade deal.

In this case I think to analyse the judgements and to present the basic grounds on which the judgements were establish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re are the major parties, such as, beneficiary,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and the other parties such as applicant, negotiating bank, advising bank and paying bank.

Therefore, in this cases, the beneficiary, the French Weapons' Supplier who did not shipped the commodities, created the false Bill of Lading, let his dealing bank make payment against the documents presented by him and received the proceeds from the negotiating bank or collecting bank, thereafter was bankrupted and escaped.

For the first time, even though the issuing bank conceived that the presented documents were inconsistent with the terms of L/C. it did not received the payment approval from the applicant against all the discrepancies, made the negotiating bank pay the proceeds to exporter and thereafter, delivered the documents to the applicant long after the time of the issuing bank's examination of documents.

The applicant who received the documents from the issuing bank, instantly did not examine the documents and inform to the issuing bank whether he accepted the documents or not.

Long time after, applicant tried to clear the goods through custom when he knew the bill of ladings were false and founded out the documents had the other discrepancies which he did not approved.

As the results, the applicant, Korea Army Transportation Command claimed, that the issuing bank must refund his paid amount because issuing bank examined the documents unreasonably according to u.c.p 500 Act 13th, 14th.

In spite of the applicant's claim, the issuing bank argued that it paid the proceeds of L/C reasonably after

receiving the applicant's approval of an discrepancy of document, the delayed shipment, but for concerning the other discrepancies, the trivial ones, the applicant did not examined the document and noticed the discrepancies in reasonable time.

Therefore the applicant sued the issuing bank for refunding it's paid proceeds of L/C.

Originally, this cases were risen between Korea Exchange Bank and Korea Army Transportation Command.

As result of analysing the case, the contents of the case case have had same procedure actually, but the lower courts, the district and high courts all judged the issuing bank was reasonable and did not make an error.

As analysing these supreme court's judgements, the problem is that whether there are the applicant's liability of examining the documents and informing its discrepancies to the issuing bank or not, and if the applicant broke such a liabilities, it lost the right of claiming the repayment from issuing bank.

Finally to say, such applicant's liabilities only must be existed in case the documents arrived to the issuing bank was delivered to the applicant within the time of the documents examination according to u.c.p 500 Act 14, d. i.

But if any the documents were delivered to applicant after time of the documents examination, the applicant had not such liabilities because eventhough after those time the applicant would have informed to the issuing bank the discrepancies of documents, the issuing bank couldn't receive repayment of its paid proceeds of document from the negotiating bank.

In the result after time of issuing bank's examination of documents, it is considered that there's no actual benefit to ask the applicant practice it's liability.

Therefore finally to say. I concluded that the Suprem Court's judgement was much more reasonable.

In the following, the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would be analysed more concretely, the basic reasons of the results be explained and the way of protecting such L/C transaction would be presented.

| |
|---|
| Key Words : Applicant, Examination of Document Notice of the Discrepancies, Judgement of Supreme Court. |
|---|

I. 서 론

신용장거래는 기본당사자로서 수출자,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있으나 기타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매입은행, 통지은행, 지급은행이 있다. 그런데 본건 거래는 프랑스 무기상인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허위 B/L를 발급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입 또는 추심하여 대금을 회수한 후 회사가 부도 도파한 사건이다. 여기서 국내 개설은행은 서류가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중 일부 하자에 대해서만 수입자인 군수본부의 동의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후 서류를 서류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제시하였다. 그런데 개설의뢰인은 은행에서 동의를 요구한 하자밖에는 다른 하자사항이 없는 줄 알고 서류심사 후 하자통지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물품을 통관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서 허위서류임을 알고 그때 서류를 심사한 결과 은행에서 제시한 하자 이외도 또 다른 하자가 있음을 인지한 후, 개설은행은 서류심사 위반에 의한 대금지급이므로 자신이 지급한 수입대금의 환급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서류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설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으며, 기타 하자에 대해서는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하자통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므로 수입대금의 환급은 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은 정당히 이루어졌다고 항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외환은행 대 군수본부 사건으로써 고등법원까지는 전부 피고인 개설은행이 승소하고 개설의뢰인인 군수본부가 패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개설은행이 패소하여 개설의뢰인인 군수본부의 승리로 끝났다. 이는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의무 및 대금지급책임과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및 하자통지의무의 관련문제로서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및 하자통지 의무의 이행유무, 법적 성질 및 범위의 문제로서 국내 관련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의무 및 하자통지기간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설의뢰인도 개설은행과 똑같이 선적서류를 교부 받은 후 개설은행에 대하여 서류심사의무 및 하자통지기간 준수와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신용장통일규칙에는 규정된 바 없다. 그리고 개설의뢰인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도 아닌데, 이러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관건인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논문에서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의무 및 지급거절사항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어 있으나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의무 및 하자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소개된 논문이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국내 사건사례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 및 대응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II. 사건사례¹⁾

1. 사건의 개요

1) 원고(대한민국)는 산하 국방부 군수본부를 통하여 1990년 11월 12일 프랑스 파리의 에피코사로부터 155mm 고폭탄 5,110발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같은 달 26일에 피고(한국 외환은행)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1990년 11월 28일경 수익자를 에피코사로 하여 금액은 미화 3,617,880 달러, 선적기일을 1991년 9월 30일(후에 1992년 11월 30일로 변경), 유효기일을 1991년 10월 30일(후에 1992년 12월 30일로 변경)로 하는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1991년 12월 31일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대금 상당액인 미화 3,617,880 달러를 개설은행에 예치하였다.

3) 피고(외환은행)는 1992년 12월 16일 통지은행인 동은행의 파리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매입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1992년 12월 21일 파리지점에 게 신용장대금 미화 3,617,880 달러에서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미화 180,894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출자인 에피코사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면서 원고로부터 예치받은 미화 3,436,986 달러를 외환은행 파리지점에 지급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외환은행의 담당직원은 1992년 12월 21일경 원고(군수본부)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피고의 파리지점으로부터 같은달 16일경 팩스로 통보받은 서류상의 불일치 사항 중 신용장조건에 반하여 선적통지가 지연되었고 송장가격이 하락되었다는 하자 사실을 통보하면서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담당직원은 선적통지가 지연된 점은 중요한 하자가 아니므로 지체보상금만은 반드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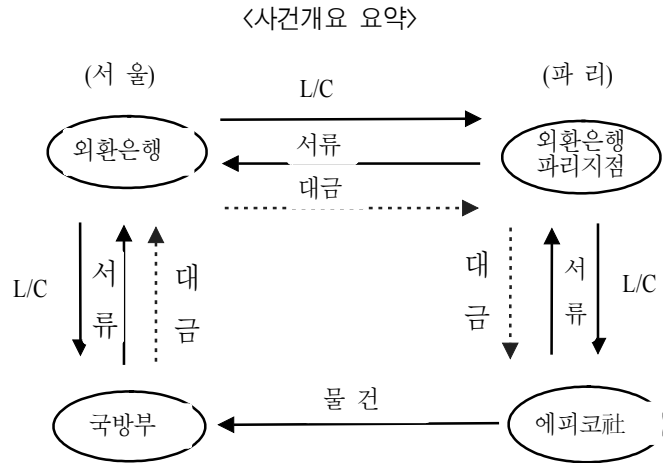
4) 그리고 외환은행은 1992년 12월 29일경 원고에게 피고 파리지점으로부터 송부받은 선적서류와 함께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른 대금 미화 3,617,880 달러에서 지체보상금으로 공제한 미화 180,894 달러를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미화 3,436,986 달러를 이 사건 무기대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신용장대금 예치금 잔액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L/C 잔액 : 미화 0.00 달러라는 기재)을 송부하면서 그 인수 여부를 3일 이내에 알려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적서류송부서를 인도하였다.

5) 원고는 선적서류송부서를 인도받은 후 서류상에 첫째, 이 사건 신용장의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의 선적통지가 없고, 다만 원고는 에피코사로부터 송장가격이 하락된 선적통지만을 받았고, 둘째, 이 사건 신용장과 관련된 이행보증서는 신용장 특수조건에 정한 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후에 발급되었으며, 셋째,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도착항, 수하인 등의 이름이 신용장과

1) 대법원 98. 6. 26. 선고 97다31298 판결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엄격히 일치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그 하자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1993년 1월 11일 피고에게 공제후 보관하고 있는 지체보상금을 국고에 환입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3년 1월 14일에 지체보상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국고에 납입하였다.

6)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무기는 해당 선박에 선허 선적된 바가 없었으므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원고는 1993년 8월 11일경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적서류 중 상기 신용장상의 조건과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로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신용장대금의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 ① 90년 11월 12일 매매계약 체결 (국방부 대 에피코사)
- ② 90년 11월 26일 신용장 개설 US\$3,617,880
- ③ 90년 11월 28일 조건변경 (유효기일 91년 10월 30일→92년 12월 30일
선적기일 91년 9월 30일→92년 11월 30일)
- ④ 92년 12월 16일 외환 파리지점에서 선적서류 매입 팩스로 통고하여 음
- ⑤ 92년 12월 21일 서류도착. 선적서류 하자사항을 군수본부 앞 전화로 통지
군수본부의 하자승인 받음
외환은행 파리지점을 통하여 대금지급
- ⑥ 92년 12월 29일 지체보상금 국고납입 후 대금지급 사실을 문서로 국방부 앞 통보함.
선적서류 인도
- ⑦ 93년 1월 11일 개설은행에 지체보상금 국고납입 지시
- ⑧ 93년 1월 14일 개설은행은 지체보상금을 국고 납입
- ⑨ 93년 8월 11일 국방부는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 예치금 반환청구

2. 법원의 판결²⁾내용

1) 서울고법 판결

원심인 서울고법은 원고인 국방부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³⁾과 동일하게 판결하였다. 그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면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지급한 대금을 보상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만일 그것이 자기가 지시한 바와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곧 그 뜻을 개설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만일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이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또는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고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한 선적서류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한 금액이나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구좌에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개설의뢰인)는 선적서류를 인도 받으면서 원고의 은행예치금에서 신용장대금이 모두 결제, 충당된 사정을 알았고, 그후 피고(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선적서류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그 선적서류의 하자 유무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8개월이 지나서 피고(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여 개설의뢰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결국 개설의뢰인은 선적서류를 수령받은 후 상당한 기간내에 서류의 거절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거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대법원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개설은행)는 1992년 12월 16일 그 파리지점을 통하여 수익자가 보낸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송부 받고 거기에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불일치하는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1일에 파리지점에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수익자 앞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대금을 상환하여 주었다. 그리고 원고(개설의뢰인)는 피고가 신용장대금 결제조건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수익자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후인 같은 달 29일야야 비로소 위 선적서류를 송부 받은 것이다. 이와같이 개설은행인 피고가 신용장대금

2) 97. 6. 17. 선고 96나38171 판결.

3) 서울지법 96. 8. 22. 선고 94가합34796 판결.

결제조건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수익자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후에 개설의뢰인에게 선적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도 개설의뢰인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하자통지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살피건대, 신용장통일규칙⁴⁾이 원심 판시와 같은 취지에서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신용장거래에 관하여는 개설은행의 신속한 하자통지의무와 그 위반시의 권리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규정은 신용장대금이 결제되기 전의 통지의무에 관한 것이다. 한편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는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신용장거래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일 뿐 아니라,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신용장거래는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원인 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신용장거래의 특성을 내세워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관계에서, 그것도 개설은행이 미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다음 사후에 선적서류를 송부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상기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본래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원심이 실시한 바와 같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불일치가 있으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 바, 이에 위반하여 피고가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면 이 사건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후에 피고가 선적서류를 송부하였다고 한들 원고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통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의 사이의 신용장대금 결제조건에 위반하여 대금을 지급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책임의 본말을 전도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국방부인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3) 판결에 대한 검토

대법원 최종판결⁵⁾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지급을 위하여 제시받은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 확인하여 만일 거기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은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신용장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⁶⁾ 개설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임의로 불일치

4) UCP 500 ACT 13조 b항, UCP 500 ACT 14조 C항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Seventh edition London Europa Pub. Ltd., 1984. p. 190.

5) 2002. 2. 21. 대법원 판결 99다49750

6) E.P. Ellinger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Singapore 1970. p. 22.

한 서류의 수리를 결정하거나 혹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흠이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개설은행은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그 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미 예치 받았다면 그 예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후 거기에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대금 지급 조건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신용장대금을 미리 지급한 다음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한 개설의뢰인은 선적서류를 점검 확인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점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개설의뢰인이 이를 게을리 하였을 때도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용장거래상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신의칙에 기하여 위와 같은 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달리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데도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점검 확인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⁷⁾ 판결의 견해는 앞서 본 법리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라고 하여 원고인 국방부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의무 및 개설은행에 하자통지의무는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전이고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판결하여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심사의무 및 하자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Ⅲ. 판결 쟁점내용 검토 및 문제점

1. 신용장상 선적서류의 불일치 사항

1) 선적통지 지연 및 선적통지서 송장금액 미기재

개설의뢰인은 이 사건 선적통지가 선적일로부터 21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적통지서에 송장금액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신용장의 특수조건 제4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1998. 3. 27. 선고 97다16114.

이 판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와 주택은행간의 사건으로 국방부는 주택은행에도 US\$1,524,000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프랑스의 에피코사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며, 똑같이 허위서류임을 알고 주택은행을 상대로 예치금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한 판결임.

한편, 개설은행인 외환은행은 1992년 12월 15일 통지은행인 동 은행 파리지점으로부터 상기 하자사항과 더불어 선적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공제되지 않은 점을 팩스로 통보 받은 후 같은 달 21일 국방부의 이 사건 신용장거래 주무담당관에게 전화 상으로 위 팩스내용을 읽어주고 서류의 인수 여부를 조회하였다. 그런데 국방부로부터 선적통지 지연 및 선적통지상 송장금액의 불기재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선적지체보상금(미화 180,894달러)을 공제한 잔여대금을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선적통지 지연 및 선적통지상 송장금액의 불기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를 하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설의뢰인인 국방부는 하자통지 및 인수조회를 전화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였다. 대법원 판결도 이 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개설의뢰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이 조건 위반으로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이행보증서 발급기간 경과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특수조건상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수입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서가 발급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1992년 12월 8일자로 발급되었고, 이행보증서의 발급의뢰인도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아니라 제3자인 INTER-STATE ENTERPRISE CORP.로 되어 있으므로 위 신용장 특수조건에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이 사건 신용장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1992년 11월 2일 그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이 연장되었는데 신청인은 그때까지도 이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유효기간 및 선적기일의 연장요청을 한 시점에 이미 이행보증서의 발급시한에 대한 신용장의 특수조건의 적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보증서의 발급의뢰인이 INTER-STATE ENTERPRISE CORP.로 되어 있음을 문제삼고 있으나 신용장조건 어디에도 발급의뢰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애초에 신용장조건 불일치의 문제는 생길 수가 없다. 혹 개설의뢰인은 이러한 이행보증서는 수입계약서상의 약정에 반한다고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이러한 주장은 신용장거래가 원인거래와는 독립된 서류만에 의한 거래인 점⁸⁾과 배치되며 신용장거래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충분하고 원인거래의 내용까지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⁹⁾

아울러 종전의 대부분의 동종거래(총 15건)에서 이행보증서가 규정일수를 경과한 후 개설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이행보증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례가 전무함에도 유독 이 사건에서만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우리 대법원에 의하여도 인정되고 있다¹⁰⁾고 주장하고 있다.

8)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second edition Warren, Gorham & Lamont 1991. p. 2-40.

9) Raymond Jack "Documentary Credits" second edition Butterworths, 1993. p. 91.

10) 대법원 1984. 2. 27. 선고 82나 3092.

3) 선하증권상의 상품명세의 상이

개설의뢰인은 신용장상 상품명세가 “1320-00-073-8847 PROJECTILE 155MM ICM M449/M449E2 5,110 RDS”로 표시되어 있으나 선하증권상에는 “TOTAL 639 PALLETS OF 155MM”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호 불일치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측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37조 c)항¹¹⁾에서는 “상업 송장상의 상품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기타 서류에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의 명세를 자세히 기재하기를 원하나 선하증권 등을 발행하는 회사는 지나친 장문의 상품명세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작성하는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하나 선하증권 등의 기타 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 즉 비교적 짧은 용어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 때 이 사건 선하증권에서 상품의 명세를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155밀리 639팰릿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반박하고 있다.

4) 선하증권사 수하인 명칭 상이

개설의뢰인은 선하증권상 수하인의 표시가 “ARMY TRANSPORTATION COMMAND, BUSAN KOREA”로 기재되어 있어 신용장상의 표시인 “THE ARMY TRANSPORTATION COMMAND, KOREA”와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THE ARMY TRANSPORTATION COMMAND, KOREA와 ARMY TRANSPORTATION COMMAND, BUSAN KOREA의 양기재가 차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모두 군수사령부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양자가 서로 별개의 기관으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용장대금의 거절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선하증권상 수익자 주소 상이

개설의뢰인은 신용장상에는 수익자의 주소가 “SOVEREIGN HOUSE, STATION ROAD, ST. JOHNS, ISLE OF MAN(GB), FRANCE”로 되어 있음에도 선하증권상에는 “SOVEREIGN HOUSE, STATION ROAD, SAINT JOHNS ISLE OF MAN-BRITISH ISLES”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은 신용장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있는 서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개설은행은 먼저 ST가 SAINT의 약어임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어서 서로 상치된다고 할 수 없고 신용장상 수익자의 소재국이 프랑스로 된 것은 명백한 오기이며 이는 수익자 주소의 앞부분(SOVEREIGN HOUSE, STATION ROAD, ST. JOHNS, ISLE OF MAN)의 기재에 의하여도 쉽게 알 수

11) UCP 500 Act 37 C항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commercial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in the credit. In all other documents, the goods may be described in general terms not inconsistent with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in the credit.

있으므로 선하증권상 이를 올바른 소재국명으로 정정 기입하는 것은 예컨대 “N.Y. FRANCE”를 “N.Y. USA”로 정정한 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신용장조건의 위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수익자의 원주소가 영국으로서 Saint Johns Isle of Man은 영국의 주소인데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신용장개설시에 프랑스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6)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의 도착항 상이

국방부는 신용장은 도착항이 BUSAN PORT로 되어 있음에도 선하증권상에는 “CHINHAE, KOREA”, 상업송장상은 “BUSAN, CHINHAE, PORT, KOREA”, 포장명세서상은 “BUSAN PORT(CHINHAE), KOREA”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서류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측은 이러한 하자는 이미 1992년 12월 15일 외환은행 파리지점이 발견하여 이를 본점에 알려 동은행 본점은 다시 유선상으로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국방부측에 통지하였으며 국방부는 그러한 하자를 인수하기로 하고 대금결제를 지시한 이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제 1)번 하자는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전에 국방부에 통지한 사항이고 2)번 하자 및 3)~6) 하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서류불일치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및 통지의무

법원은, “신용장거래의 특성을 내세워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에서는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개설은행인 피고가 신용장대금 결제조건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후에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에게 개설은행과 같은 하자통지의무를 인정하거나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¹²⁾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 선적서류의 하자 유무를 개설은행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있는가 라는 문제는 신용장통일규칙상 UCP400¹³⁾에서는 상당한 기한 내, UCP 500에서는 7영업일 내(UCP 500 제13조 b항) UCP5-112조 (1)항 (a), (b)¹⁴⁾에서는 3영업일 내로 하도록 한 규정은 전

12) 대법원판결 97다31298, 1998. 6. 26. 선고.

13) UCP 400 Act 16. c항

The issuing bank shall have a reasonable time in which to examine the documents and to determine as above whether to take up or to refuse the documents.

14) UCC §5-112. (1) A. (a) (b)

(1) A bank to which a documentary draft or demand for payment is presented under a credit may without dishonor of the draft, demand or credit.

(a) defer honor until the close of the third banking day following receipt of the documents; and

(b) further defer honor if the presenter has expressly or impliedly consented thereto.

부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규정이고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관한 규정과 무관한 것이다. 이에 관한 근거로서 국내상법 제69조 규정¹⁵⁾, 미국통일상법전 제2-602조 1항¹⁶⁾에 의하면 “물품의 거절은 그 인도 또는 제공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거절은 매수인이 적시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비록 신용장통일규칙상 명문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매매계약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수인에 해당하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수입화물을 표창하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서류들을 심사하고 하자가 있으면 즉시 통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⁷⁾ 즉,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의무도 신용장통일규칙상의 개설은행의 심사의무와 원칙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건 사안의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이 하자있는 서류를 송부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불일치 사항을 개설은행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게 대금지급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대금지급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대금지급을 한 후에도 이러한 개설의뢰인의 하자통지의무가 있느냐에 논점이 있다고 하겠다. 신용장거래는 다른 매매 계약상 매매대금 지급거래와는 달리 개설은행의 지급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지급이다. 따라서 비록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이 대금지급을 한 경우에는 매입은행에 대해서 모든 하자사항이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나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후 서류심사 기간까지도 경과한 경우에는 어떠한 추가 하자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지급된 대금의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일이다. 즉, 매입은행에 대해서 지급된 대금의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조서류나 사기의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매입은행의 사실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한 후 서류심사기간까지도 경과한 후에 선적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송부하고 나서 개설의뢰인이 서류심사기간 내에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개설의뢰인의 지급대전에 대하여 개설은행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신용장 거래의 기본적인 실무 사안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만약에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게 서류심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다시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가 기간내에 하자를 주장하여 대금지급의 반환을 청구하였더라도 개설은행은 이미 대외적으로 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

Failure to honor within the time here specified constitutes dishonor of the draft or demand and of the credi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section

(4) of Section 5-114 on conditional payment]

15)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16) UCC 제2-602조 1항

Rejection of goods must b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ir delivery or tender. It is ineffective unless the buyer reasonable notifies the seller.

17) Trimble, “The Law merchant and the Letter of Credit”, Harvard Law Review 138 (1948).

다. 신용장통일규칙¹⁸⁾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대외적으로 지급된 대금은 서류심사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하자를 이유로도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 사안을 개설의뢰인의 심사의무기간 및 의무에만 초점을 맞추어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것도 서류심사기간 내에 서류를 개설의뢰인에 인도하고 나서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의무 및 하자통지의무를 따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설은행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의무 및 하자통지의무는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 그리고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 내에만 존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및 하자통지의무 위반을 강조한 나머지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후 서류심사기간 경과한 후에 선적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송부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때는 비록 개설의뢰인이 서류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거절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개설은행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매입은행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판결로서 신용장거래의 실무상 타당한 판결이라고 하겠다. 이에 부가하여 상환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서류심사를 하기 전에 대금은 이미 매입은행에게 지급된 후이므로, 개설의뢰인도 대금지급 후에 서류심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환신용장의 경우에는 대금지급의 거절 여부의 판단기준이 상환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은행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상환은행이 미리 대금지급을 하였더라도 개설은행이 최종적으로 지급거절을 할 경우에는 매입은행은 지급받은 대금을 상환은행에게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상환신용장의 경우는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이 경과 후 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심사 하자통지의무를 전혀 지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3.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및 하자통지 범위

법원은 “원고인 국방부가 위 선적서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미 원고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이 수익자에게 지급·결제된 이후이므로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를 인수한 시점이 신용장대금이 결제되기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한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다.¹⁹⁾

그리고 법원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이미 개설은행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후 개설의뢰인이 서류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이 비록 서류의 점검·확인과 인수거절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했다 하더라도 개설의뢰인은 이익권을 상실하지 않고 피고에게 그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의 판결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이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신용장거래에 관하여 신속한 거절통지의무와 그 위반시의 권리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18) U.C.P 500 Act 13. b항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or a nominated Bank acting on their behalf, shall each have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whether to take up or refuse the documents and to inform the party from which it received the documents accordingly.

19) 1998. 3. 27. 대법원 판결 97다16114.

모두 신용장대금이 결제되기 전의 통지의무에 관한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신용장대금이 결제된 후에는 위 각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본 신용장통일규칙의 관계규정이나 신용장대금 결제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실무처리 절차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서류조사 및 인수거절통지의무를 지는 것은 개설의뢰인의 지급지시에 의한 것이든 개설은행의 일방적인 지급지시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 결제 전에 서류를 인도하였느냐의 문제로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상환신용장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종전 판결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²⁰⁾

이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면 만약에 신용장의 대금지급이 개설의뢰인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에게 추가적인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²¹⁾ “개설은행은 대금지급거절통지를 할 때 서류수리를 거절하는 이유가 되는 모든 불일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을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제시인에게 반송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서류의 불일치사항을 전부 용인하겠다는 것이므로 그후에 어떠한 불일치를 근거로 지급된 대금을 반환청구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금지급의 거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조건의 불일치로 대금지급거절을 한 후 수익자가 이를 충족시킨 후에 또다른 조건위반을 이유로 대금지급거절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개설은행의 대외적 대금지급이 개설의뢰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행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또 다른 하자나 조건위반을 이유로 지급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과 상의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서류를 심사한 후 판단하여 서류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된 경우나 또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개설의뢰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와는 달리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미 지급을 위하여 예치된 대금의 반환이나 대외적인 지급에 대한 상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즉, 개설은행의 일방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개설은행에게 서류심사의 착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가 있더라도 개설은행이 발견한 하자는 개설의뢰인과 협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개설의뢰인은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서는 개설은행에게 항의할 수 없으나 개설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추가적인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개설은행에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법원은 “신용장통일규칙의 관계규정이나 신용장대금 결제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실무처리 절차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서류조사 및 인수거절통지의무를 지는 것은 개설의뢰인의 지

20) 김태훈 변호사 :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서류조사 및 하자통지의무” 중재지, 1998년, p. 30 참조.

21) U.C.P 500 Act 14 d항 ii호

such notice must state all discrepancies in respect of which the bank refuses the documents and must also state whether it is holding the documents at the disposal of, or is returning them to, the presenter.

급지시에 의한 것이든 개설은행의 일방적인 지급지시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 결제 전에 서류를 인도하였느냐의 문제로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결은 실무관행 및 신용장통일규칙에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IV. 결 론

이상의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에 보면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하자통지의무는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전 서류심사기간 내에서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설은행이 이미 대금결제를 한 후 서류심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심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지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때는 개설의뢰인이 하자통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개설은행이 지급된 대금을 반환하여 올 수 없으며, 다만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에 지급거절사유의 타당성 논쟁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신용장의 서류심사기간이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과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기간의 양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내에 개설의뢰인의 심사기간도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개설은행이 서류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대외 지급을 한 경우나 개설의뢰인과 협의 후 대외지급을 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은 서류에 추가적인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언제든지 항의할 수 있고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상환청구를 거절하든가, 개설은행에 예치한 대금으로부터 지급된 경우 그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한 판결내용이다. 이것은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의무를 강화한 것으로서 개설의뢰인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개설의뢰인의 경우는 개설은행과 달리 신용장상 서류심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얼마든지 개설은행에 대하여 서류심사의 잘못을 이유로 지급거절 할 수 있다는 판결로서 은행의 서류심사의무에 대한 새로운 법원판결로 보여진다.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은행의 대책은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심사 후 하자를 수령하겠다는 각서를 받고서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지급한 후에는 개설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제시된 서류를 지급거절기간 경과 후에 개설의뢰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지급된 대금을 개설의뢰인에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양영환, 서정두, “신용장사례연구”, 삼영사, 1995.
- 양영환,오원석. 서정두 공저. “신용장론”. 2002.
- 한주섭, “최신신용장”, 동성사, 1994.
- 이대우·양의동·장홍훈 공저, “국제무역실무 사례” 두남출판사, 2004.
- 이대우·김종락 공저, “국제무역거래론”, 두남출판사, 2002.
- 이대우·양의동 공저, “신용장론”, 두남출판사, 2005.
- 이대우·양의동 공저, “국제무역실무”. 두남출판사. 2006.
-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4.
- 강원진. “무역실무”, 박영사, 2004.
-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2000.
- 배용원. “신용장”. 무역경영사. 2000.
- 전순환. “신용장통일규칙”, 한울출판사. 2006.
- 남풍우. “무역실무”, 두남출판사, 2006.
- 신근제. “ON-OFF 무역실무” 무역경영사.2005.
- 유중원. “신용장론”, 육법사.1998.
- 김태훈 변호사,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서류조사 및 하자통지의무, 중재지, 1998.9.30.
- Trimble, “The Law merchant and the Letter of Credit” Harvard Law Review, 1948, p. 138.
-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 of Credit” second edition, Warren, Gorham & Lamont, 1991.
-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Europa Pub Ltd London 1984.
- Raymond Jack “Documentary Credits second ed.” Butterworths London, Dublin, Edinburgh.
- E. P. Elliger,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Singapore, 1970.
- I.C.C., Examination of Documents, Waiver of Discrepancies and Notice Under UCP 500 DOC 470/952, Rev 2, 2002.
- _____,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 1995-2001, *CC Publication No. 532, 2002.
- _____, More Queries and Responses on Documentary Credit-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publication No. 596 ICC Publication, S.A., 1999.
- _____, Opinion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9-1991, ICC Publication No. 494.
- _____, Opinion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UCP 500(1995-1996) Publication No. 565.
- _____,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ICC Publication No. 500/2\500/3, 2002.

_____,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ICC Decision on Original Documents) DOC 470/871 Rev.

_____,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ISBP).ICC pub. no 645- ICC publishing S.A, 2003.